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61
----------	-----

2025. 3. 21.(금)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박봉순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5년 3월 4일

다. 회부일자: 2025년 3월 5일

라. 상정일자: 2025년 3월 13일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봉순 의원)

가. 제안이유

- 학교 밖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2024.12.2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제10조 4(학교 밖 교육

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의 제3항 등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위임하도록 규정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다. 현장체험학습 지원 계획(안 제4조)

라. 현장체험학습 계획(안 제5조)

마. 사전답사(안 제6조)

바. 안전교육(안 제7조)

사. 보조인력의 지정 및 배치 기준, 보조인력의 역할 등(안 제8조, 안 제9조)

아. 지도·감독 및 위임 규정(안 제10조, 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원호)

가. 조례 제안이유 검토

- 본 조례안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하여 학교 밖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의 조례로 위임하도록 규정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총 11개 조항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하여 목적 및 정의, 교육감의 책무, 현장체험학습 지원 계획, 현장체험학습 계획, 사전답사, 안전교육, 보조인력의 지정 및 배치 기준, 보조인력의 역할, 지도·감독 및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함
 - 본 조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체험학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규정함으로 안 제1조의 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2조(정의)는 본 조례에 해당하는 “학교”,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안전교육”, “인솔자”,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용어의 뜻을 규정함
 - 제2항 현장체험학습은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1일형 현장체험학습과 2일 이상 이루어지는 수학여행·수련활동과 같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정의함
 - 제3항의 사전답사는 시설의 안전·위생 등 위험지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책임자, 인솔자가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시설 등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규정함
 - 제4항의 안전교육이란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가능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규정하였고,
 - 제5항에서 인솔자는 현장체험학습에서 학급 또는 팀을 인솔하는 교사와 보조인력에 대해 정의함
 - 제6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정하여 안전요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 교육감의 현장체험학습의 지원 계획 수립·시행을 정의함

○ 안 제4조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지원 계획을 규정함

- 본 조항에서는 학교장의 현장체험학습의 계획 수립·시행을 정의하여 교육감과 책무를 강화시킨 것임

○ 안 제5조는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대하여 규정함

- 학교장이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을 학교의 사정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장의 책임하에 안전 대책을 확보한 후 실시하도록 학교장의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6조는 사전답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현장체험학습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사 당일에 참여하는 인솔자의 책무를 강화하여 학교 규모 및 현장체험학습의 유형 등에 따라 사전에 시행하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필요한 사항임

○ 안 제7조는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학생 및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통수단 운전자 및 시설 관리자가 학생에게 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필수적 사항의 규정이라 판단됨

- 안 제8조는 보조인력의 지정 및 배치 기준에 대한 규정임
 - 학교장은 보조인력의 지정 및 배치 기준을 정해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학교에서 실시한 사전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9조는 보조인력의 역할 등을 정함
 - 보조인력은 인솔교사의 보조와 교육활동 준비 단계부터 보조할 수 있으며 현장체험학습 모든 일정에 동행하여 인솔교사를 보조·지원 하도록 등 보조인력의 역할을 강화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10조는 교육감의 지도·감독, 안 제11조는 위임 규정을 정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하여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2024.12.20. 개정, 2025.06.21. 시행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4 제3항¹⁰⁾ 등에 근거하여 시도 조례로 위임하도록 규정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전국 17개 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이 본 조례를 시행하고 있음(별첨1)
- 현장학습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와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활동으로 운영하고, 학생의 참여와 교사의 지도에 기반한 교육활동으로 관련 법규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정책에 부합되게 실시하고, 사회적 차별없이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임

10) 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12. 20.]

- 현장체험학습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인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1일형 현장체험학습, 자유학기제체험학습 등으로 운영하고 있고 충청북도 교육청은 「2025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시행하여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운영 방침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2025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근거하여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던 사항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근거와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으로써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그리고 학교현장외의 체험학습과 관련하여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및 학생의 안전 및 교사의 역할, 안전관리를 위한 인솔자와 보조인력 지정, 사전답사, 안전교육 등 현장체험학습의 목적을 실현하기 앞서 안전을 위한 중요한 규정을 담은 조례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법령 입안 및 심사 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개정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와 방법을 준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적절한 입법 조치라 판단됨

[별첨1]

〈타시도교육청 조례 현황〉

교육지원청	조례명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제6조(현장답사) 제8조(학부모의 참여) 등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제7조(학부모의 참여) 제9조(업무의 위임) 등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제6조(국외체험학습) 제8조(체험학습 인솔 책임자 등) 제9조(학생 준수사항 등) 제10조(긴급사항 처리 등) 제13조(학부모의 참여) 제15조(업무의 위임) 등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제4조(학생안전 기본계획) 제9조(학부모의 참여) 등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지원 조례	제7조(안전사고예방) 제8조(학생과 학부모의 참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제8조(학부모의 참여) 등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	제14조(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의 지정 등) 제15조(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의 임무) 제18조(현장체험학습 자체평가) 등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자료개발 및 보급) 제9조(현장체험학습 사전 안전교육)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제7조(안전요원의 지정 등) 제8조(안전요원의 임무) 제9조(안전요원 인력풀 구성·운영) 제14조(수학여행지원단 설치·운영) 등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제8조(학부모의 참여) 등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조례	제7조(학부모의 참여) 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제8조(학부모의 참여) 제10조(수학여행지원단 설치·운영) 등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학부모의 참여) 등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생 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② “현장체험학습”이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1일형 현장체험학습과 2일 이상 이루어지는 수학여행·수련활동과 같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말한다.

③ “사전답사”란 현장체험학습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자가 직접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시설 등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안전교육”이란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⑤ “인솔자”란 현장체험학습에서 학급 또는 팀을 인솔하는 교사와 인솔

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말한다.

⑥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지정 또는 위탁한 전문기관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하 "안전요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13조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7.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8.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9.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⑦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학생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현장체험학습 지원 계획) ①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현장체험학습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3.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운영 및 지원
4. 그 밖에 현장체험학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현장체험학습 계획)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현장체험학습 대상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과 연계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안에 관한 사항
4. 현장체험학습 관련 청렴 및 안전 등 교육에 관한 사항
5. 현장체험학습 경비에 관한 사항
6. 현장체험학습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장이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6조(사전답사)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안전대책이 확보된 경우 학교장 책임하에 생략할 수 있다.

② 현장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현장체험학습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에 학생 및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통수단 운전자 및 시설관리자가 학생에게 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인력의 지정 및 배치 기준) ①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체험학습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이 경우 학생의 연령, 이동거리, 활동유형, 참여학생 수, 장소의 특성, 숙박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안전요원을 보조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안전요원을 배치하기 어려울 때에는 안전요원이 아닌 사람을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사전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배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인력의 역할 등) ① 보조인력은 인솔교사의 지시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시 인솔교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 보조인력은 현장답사 등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현장체험학습 모든 일정을 동행하여 인솔교사를 지원한다.

제10조(지도·감독)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보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행보류, 시행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임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10. 8.] [대통령령 제34929호, 2024. 10. 8., 일부개정]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67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⑤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2024. 12. 20.>

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 조례 제정과 별도로 이미 예산 지원하고 있음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사항은 별도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음

4. 작성자: 기획관리국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